

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							
취급방식		[] 제조 [] 보관·저장 [] 판매 [] 사용 [] 운반					
유해화학물질				용도	최대 보유량 (ton)	대상구분 (허가/ 신고/ 면제)	연간취급 예정량 (톤 또는 m³)
구분	물질명	고유번호	화학물질 식별번호 (CAS No.)				
[] 인체 급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인체 만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생태유해성물질							
[] 사고대비물질							
[] 인체 급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인체 만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생태유해성물질							
[] 사고대비물질							
[] 인체 급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인체 만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생태유해성물질							
[] 사고대비물질							
[] 인체 급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인체 만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생태유해성물질							
[] 사고대비물질							
[] 인체 급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인체 만성유해성물질							
[] 생태유해성물질							
[] 사고대비물질							
합 계							

※ 작성방법

- 1.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[]에 모두 표기합니다.
- 2. 대상구분(허가/신고/면제)란에는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과 비교하여 허가, 신고, 면제 중 해당되는 구분을 기재합니다.
- 3.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.